

울산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82
----------	------

제출연월일: 2024. 5. 30.

제출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위해 도서관 폐기자료의 주민 무상제공, 주민 포상 등 일부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1조(목적)

- 「작은도서관 진흥법」 근거법령 명시

나. 안 제4조(설비요건) 6석 이상의 열람석 설비요건 삭제

다. 안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두며 심의사항 심의
- 도서관 운영 및 발전,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사항
- 공공도서관 위원회에서 기능 대행

라. 안 제13조(기증자료)제2항: 신설

- 기증받은 도서가 적합하지 않을 때 개인, 단체, 기관 무상제공 가능
- 폐기 또는 제적, 무상제공 사항은 위원회 심의 후 시행

마. 안 제14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제2항 및 제3항: 신설

- 폐기 또는 제적된 자료는 개인, 단체, 기관에 무상제공

바. 안 제14조의2(포상): 신설

- 도서관 문화행사 등 참여 실적이 인정되는 구민, 시책추진에 공로가 있는 주민, 단체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음

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 정비

28 (제264회-행정자치위제5차부록)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4. 근거법규: 따로 붙임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 제4조, 제5조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사항: 해당사항 없음

나. 규제사무심의: 해당사항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 2024. 4. 22. ~ 5. 13.(21일간) / 의견없음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4조제2호 본문 중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하며, 건물면적”을 “건물면적”으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소장 자료의 교환, 이관, 기증,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도서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원봉사자 등 운영 인력을 활용”을 “자원봉사자, 도서관 활동가 등 인력을 모집·운영”으로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문화공간 등에 이관하거나,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의 제목 “(자료의 교환·이관 등)”을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으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폐기 또는 제적된 자료는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도서관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무상제공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포상) 구청장은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문화행사 등에 참여하여 실적이 인정되는 주민 또는 도서관 시책추진 등에 공로가 있는 주민,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u>이 조례는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의 습득 및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울산광역시 중구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u>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 -----.</p>	<p>제2조(정의) ----- -----.</p>
<p>1.“작은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 제4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u>동주민센터</u> 내에 설치된 도서관도 작은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한다.</p> <p>2. (생 략)</p> <p>3.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도서관법」을 <u>준용한다.</u></p>	<p>1. ----- ----- ----- -----, <u>동행정복지센터</u> ----- ----- -----.</p> <p>2. (현행과 같음)</p> <p>3. ----- ----- <u>따른다.</u></p>

제4조(설비요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생략)
2.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하며, 건물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 이어야 한다. 다만, 동 행정복지센터 도서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생략)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도서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우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제4조(설비요건) -----
-----.

1. (현행과 같음)
2. 건물면적-----

-----.
3. (현행과 같음)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소장 자료의 교환, 이관, 기증,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도서관 운영 및 개선

<신 설>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문화계·교육계·도서관계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나 지역 주민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대 행한다.

<삭 제>

수 없을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삭 제>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삭 제>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 예산 및 신간도서 확보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도서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

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다만, 심의사항이 경미한 경우와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울산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도서관의 운영 등) ①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위치하는 도서관은 관할 동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삭 제>

제11조(도서관의 운영 등) ① --

-- . -----

위탁 -----

심의를 거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강사 및 자원봉사자 등 운영 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3조(기증자료) (생략)

<신설>

제14조(자료의 교환·이관 등) (생략)

<신설>

<신설>

-----.

② (현행과 같음)

③ ----- 자원봉사자, 도서관활동가 등 인력을 모집·운영-----.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기증자료)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문화공간 등에 이관하거나,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폐기 또는 제적된 자료는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도서관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무상제공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

<신 설>

제14조의2(포상) 구청장은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문화행사 등에 참여하여 실적이 인정되는 주민 또는 도서관 시책추진 등에 공로가 있는 주민,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근거법규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작은도서관의 조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도서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 조례개정 등으로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미첨부 사유

- 조례의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발생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3. 작성자

- 소 속: 도서관과
- 직 급: 지방행정주사
- 이 름: 김남희
- 연락처: (052)290-3282